

문서번호		화 30114-		기안용지 (전화: 731-6186)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운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7. 7.					
보조 기관	올림픽준비단장 <b>전철</b>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문서통제		
	올림픽기획관 <b>By</b>				법무총기 07. 8. 8		
	문화담당관 <b>서</b>				법무담당관 서		
기안책임자		이노근 <b>우</b>				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 의			
제 목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시행					
제 1 안		내부결재		87. 8. 14 예규제 488			
1.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원, 녹지대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의 건립 절차, 대상선정, 위치선정, 부지면적등 제한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예규로 제정, 시행하고자하며 아울러 시보 에 게재, 공포하도록 합니다.							
참부 1.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보고 (시장방침 1부)							
2. 동상, 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호)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게재 의뢰

1.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예규로써 시행코저

시보게재를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게재제목 :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호)

나. 게재일 : '87. 8. . 시보

다. 게재내용 : 별 - 첨 -

첨부 1.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끝.

제 3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상및 기념비 설치에 관한 회지

1. 공원 30114-462(86. 6. 10), 공원 30114-537(86. 7. 12),

녹지 01254-0116(86. 8. 20), 공원 30114-831(86. 11. 25), 녹지

-87, 86. 12. 15), 공원 30114-881(86. 12. 17), 공원 30114

(87. 2. 7), 공문 30114-398(87. 6. 12)호와의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협조 요청한 동상.기념비 건립부지 사용 검토요청에 대하여

그동안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 및 시정자문위원회 (관광.체육.문화분과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다음과 같이 확산하니 업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동상.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규정"(별첨참조)을 예규로 시행  
계획임.

- 자문위 구성운영      ○ 신청및 심의절차      ○ 선정기준
- 분야별형평유지      ○ 위치선정              ○ 설치부지면적
- 설치제작시 고려사항      ○ 허가및 사후관리등

나. 동상.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희시 (별첨 참조)

- 동상 4기. 기념비 5기 - 건립부지 할애

동상 - 김파리아(보라매공원), 신채호(서울대공원)

조명하(서울대공원), 전진환(공단근처)

기념비 - 강소천(어린이대공원), 이하운(서울대공원),

박지원(올곡로 낙원동 녹지대), 차천로(서울대공원)

박목월 (한양대부근 녹지대)

○ 무인 독립운동 기념비. 태극기해설탑 - 독립기념관으로 유도

○ 건립부지규모는 조정 (4.8평이내)으로 시행

○ 건립모형은 사전 예술위원회 심의

다. 구체적인 위치 선정 및 허가절차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귀국에서 조치

하기 바람.

첨부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 보고 1부. 끝.

수신처 공원과장, 녹지과장, 건축지도과장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 건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①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동상·기념비 건립 기준에 관한 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규정은 공원·녹지대등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서울특별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원·녹지대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영구히 설치할경우에 적용된다. 단, 순수한 창작 미술작품의 전시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①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 원 수 : 위원장, 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등 25명 내외로 한다.

2. 구 성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사학, 언론, 문학, 예술, 공원, 환경설계, 건축등 각분야에 종사하는자중 덕망있는자를 선정, 위촉하며 당연직은 올림픽준비단장, 환경녹지국장, 시정연구관, 올림픽기획관으로 하되 위촉직은 운영시마다 별도로 구성한다.

3. 운 영 : 년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②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동상.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설치하고자하는 대상의 인물이나 사건의 고종및 사료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건립업부, 규모, 위치등에 관한 사항
- ③ 동상.기념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동상.기념비 자문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수 있다.

제 4 조 ( 신청및 심의절차 ) ① 동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동상.기념비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건립하고자하는 공공용지관리부서)에서는 제 3 조 규정에 의한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하며 심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립대상, 목적
  2. 건립주체의 주소.성명
  3. 건립희망위치와 그 사유
  4. 건립기간, 건립재원, 건립규모(면적, 높이), 건립재료, 삽입문장, 건립형태등 건립계획
  5. 설치대상 인물이나 사건의 요약및 세부내용
  6. 건립작가명 및 활동 경력
  7. 사후 관리 계획서등
- ②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는 동상.기념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여 건립적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설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립위치, 건립규모, 건립기간등 제반 건립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 선정기준 ) ①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선정한다.

1. 국가와 민족의 응성.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항 (역사성)
  - 가. 국난극복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인물이나 사실
  - 나. 독립운동의 정신적 즐거가 된 인물이나 사실
  - 다. 의병.의열사 반공투사
2.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국민의 교양증진과 사회 교육적인 사항 (교육성)

3.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에 뛰어난 업적과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 (문화.예술.학문 존중)
4. 기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현저하게 부합되는 인물이나 사건
5.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다수의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사항 (보편성)

② 대상인물이나 사실은 이미 역사적 자료나 고증 또는 학문적 비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정립된 사항이어야 한다.

제 6 조 ( 분야별 형평유지 )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대한 심의는 다음사항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삼국시대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말이후의 시대별 형평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대상분야별 형평
3.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에 대한 형평

제 7 조 ( 위치선정 )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위치를 심의 선정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로명, 동명, 출생지, 묘소, 활동이나 사실의 근거지등 연고성
2.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성격과 공원 녹지대의 성격
3. 설치하고자하는 공원이나 녹지대의 과밀화 정도
4. 독립운동에 관련된 동상이나 기념비는 가능한한 독립기념관등으로 유도

제 8 조 ( 설치부지면적 ) ①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다음 규모 범위내에서 설치 하되 동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정하여야한다.

1. 동 상 : 부지면적 16㎡이하

2. 기 념 비 : 탑 형 - 부지면적 16㎡이하

비 문 형 - 부지면적 10㎡이하

② 기설치되어있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기존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수 있다.

- 제 9 조 ( 설치제작시 고려사항 ) ①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원, 녹지대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품위있고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 ②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형태, 문장의 내용은 충분한 역사적 고증으로 확인된 사항이어야 한다.
- ③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작품성, 조형성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제 10 조 ( 허가및 사후관리 ) ①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기초로하여 공원법,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하되 허가시에는 서울특별시 예술위원회에 동상, 기념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작품성과 조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동상, 기념비를 건립한 주체는 동상, 기념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의 기부채납 여부에도 불구하고 청소, 보수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 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 보고

문화관광국	박기근	김국준비서관	부시장	시장
	박기근		김기현 7.18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관광부서장 ~~관광부서장~~ ~~관광부서장~~ ~~관광부서장~~ ~~관광부서장~~  
 승격추진위원회 ~~승격추진위원회~~ ~~승격추진위원회~~ ~~승격추진위원회~~ ~~승격추진위원회~~  
 再檢討會 ~~再檢討會~~ ~~再檢討會~~ ~~再檢討會~~ ~~再檢討會~~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2090



을 령 력 른 비 단

2255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 소위원회 개최 : '87. 6. 26. 15:00
  - 건립기준 및 규모 조정
  - 건립대상자에 대한 대체 심의
- 소위원 및 자문위원 검토 : '87. 7. 6 - 7. 10.
- 시정자문위원 심의 : '87. 7. 24.
  - 관광 체육 문화 및 도시개발 본과위 20명

1. 건립기준 및 규모 조정

○ 건립기준

- 대상선정
  - 국가민족의 융성발전에 현저한 기여 (역사성)
  - 국민의 교양증진과 사회교육적 사항 (교육성)
  - 민족문화계승발전과 학문발전에 획기적 기여 (본예, 학문존중)
  - 다수의 국민감정에 부합 (보편성)
- 위치선정
  - 가로명, 동명, 출생지, 활동근거지 등 연고성
  - 설치하고자하는 동상.기념비와 장소의 성격(연관성)
  - 설치하고자하는 장소 지역의 과밀 정도

○ 건립규모(부지)

- 동 상 - 16m<sup>2</sup> (4.8평) 이내
- 기 념 비 탑 형 - 16m<sup>2</sup> (4.8평) 이내
- 비 문 형 - 10m<sup>2</sup> (3.0평) 이내

\* 건립기준, 규모, 절차 등 규정확함이 합리적임.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원·녹지대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영구히 설치하는 경우
- 순수한 창작 미술작품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3.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위 원 --- 20명 내외 (10명 이내 소위원회 운영 가능)
- 운 영 --- 년 2회 (상.하반기) 운영  
운영시마다 별도 구성.운영
- 기 능 --- 동상.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대상인물 사건의 고증및 사료에 관한 사항  
건립여부, 규모, 위치등에 관한 사항

## 4. 설치및 사후관리

-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품위있고 내구성있는 재료 사용
- 서울특별시 예술위원회 사전 심의.
- 기부체납여부 불구 사후관리 적극 노력

\* 위의 제사항을 서울특별시 예규로 제정, 시행 추진.

첨 부 :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동상.기념비 건립신청자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요약)

○ 동 상 : 건립 신청 4기 전부 부지할에 권고

- 서울은 타대도시에 비해 동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 도시의 품위와 역사적 고도로서 조화.
- 조형성, 예술성을 갖춘 동상 건립 중요.
-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고성과 연계 필요.
- 향후 독립운동가는 독립기념관으로 유도 필요.

○ 기 념 비 ; 요청 7기중 5기 부지할에 권고

- 문화예술인들의 기념비는 시민의 정서 함양 기여.
- 문화도시 거리분위기를 갖고 교육적 의미도 동시 부여.
- 이미 건립의견이 모여 요청한것이므로 지원 필요.

○ 건 의

- 동상 4기, 기념비 5기 : 건립부지 할에 조치 (환경녹지국)
- 건립부지 규모는 조정안(4.6평이내)으로 시행. (환경녹지국)
- 건립모형은 사전 예술위원회 심의. (건설관리국)



( 동상 기념비 건립 신청 심토 위원 )

○ 소 위원 - 6명 전원

성 명	전 공	년 령	현 직
이 현 희	사 학	51	성신 여대 교수
최 만 린	미 술	46	서울 미대 교수
송 정 숙	언 론	50	서울신문 논설위원
강 홍 빈	기 타	42	주공 주택 연구소장
오 휘 영	기 타	49	한양대학원 교수
유 경 환	언 론	51	조선일보 논설위원

○ 자문위원 - 12명

성 명	전 공	년 령	현 직
김 동 리	문 학	74	문인 협회장
이 규 태	언 론	53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 성 수	사 학	53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김 동 욱	문 학	65	민족문화추진회장
박 영 석	사 학	54	극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중	조 각	61	조각가, 전홍대 미대 교수
김 경 승	조 각	72	예술원 회원
유 준 상	미술평론	57	현대미술관 전문위원
민 경 현	조 경	53	정원문화연구원장
강 건 희	건 축	51	홍익대 건축과 교수
전 숙 희	문 학	68	국제펜클럽본부회장
민 영 수	-	67	광복회 사무국장

3. 건립대상별 검토 내역

구분	대상자	대표 경력	의망 위치	조정 위치	특기사항
동상 (4기)	김마리아	독립운동가	보라매 공원	보라매 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신채호	인문인 독립운동가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 서울대공원에 어려울경우 삼청동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므로 삼청공원도 가능. (이현희)
	조명하	독립운동가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 어린이대공원은 너무 과밀 협소 서울대공원보다 의미확함(강홍빈)
	전진한	정치인 노동운동가	여의도 광장 또는 기타최적지	공단 근처 녹지대	·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로 동상건립 의의는 있음. · 장소는 노동운동과 관련있는 위치에 건립 · 최근세인물이므로 동상건립이 너무 이룸 (강홍빈, 송정숙)
기념비 (7기)	강소천	아동문학가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이하운	시인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 동시대인물 다수 있음 (송정숙)
	박지원	학자, 소설가	파고다 공원	율곡로, 낙원동 녹지대	· 공통적으로 찬성 · 3-4대에 걸친 거주지가 낙원동, 계동일대이므로 언고지근처 적정 (이현희, 김동욱, 송정숙)
	차천로	시조시인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 공통적으로 찬성
	박목월	시인	적장장소	한양대부근 녹지대	· 공통적으로 찬성 · 한양대에 오래 봉직하였으므로 한양대 부근 녹지대(김동욱) · 동시대 인물이 다수 있음. (송정숙)
	무인독립운동기념비	독립운동가	서울대공원 적정지	독립기념관유도	· 공통적으로 독립기념관 유도 권고 · 천도교와 관련있으므로 파고다 공원 적정 (이현희)
	메극기비설립	메극기비설	파고다공원동계소	독립기념관유도	· 공통적으로 독립기념관 유도 권고